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531186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기연, 윤성범

변론 종결2024. 4. 19.

판결 선고2024. 5.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362,270원 및 이 중 344,432원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2023. 7. 18.까지 연 10.7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나. 373,909,752원 및 이 중 206,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2023. 7.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57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근보증 한도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무역어음대출	200,000,000	21,600,000	2011. 10. 18.	2018. 04. 23.	연10,769%	C
무역어음대출	480,000,000	576,000,000	2015. 04. 28.	2016. 04. 28.	연15%	C

나. 2023. 6.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미변제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무역어음대출	344,432	8,017,838	8,362,270
무역어음대출	206,000,000	167,909,752	373,909,752
총합계금	206,344,432	175,927,590	382,272,0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8,362,270원 및 이 중 원금 344,432원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7. 18.까지 연 10.7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② 373,909,752원 및 이 중 원금 206,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7.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7. 18.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한 채권액 232,250,033원 중 160,252,522원에 대하여는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71,997,611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 이행하도록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출자전환하여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은 소멸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7 회생사건에서 2018. 7. 4.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중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한 채권액 232,250,033원 중 160,252,522원(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9%)은 소외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1,997,611원(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1%)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현금으로 분할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10년 동안 현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한 회생계획안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등 참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당시의 신주의 시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출자전환 받은 소외 회사의 신주 관련 변제액을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파라